



## 제1조 (약관의 적용)

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, 동 법 시행규칙, 퇴직연금감독 규정,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 제1조의 2 (용어의 정리)

-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. "사용자"란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- 2. "가입자"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.
  - 3. "퇴직연금사업자"란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  - 4. "디폴트옵션제도"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"사전지정운용제도" 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  - 5. "적립금"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#### 제2조 (가입대상)

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3조 (예금과목)

-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.
  -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
  - 2. 디폴트옵션형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제도의 정기예금으로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

### 제4조 (계약기간)

-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하며,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① 고정금리형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. 월. 일로 합니다.
- ②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



### 제5조 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# 제6조 (이율의 적용)

- ①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및 매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하고,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,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③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약정한 만기일 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지급합니다.

# 제7조 (특별중도해지)

- ① 제 6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호 중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사유에 의해 예금주가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의 특별중도해지이율(약정이율)을 적용합니다. 단,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, 제 11 호와 제 12 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약정이율(가산금리 포함)을 적용합니다.
  - 1. 가입자의 퇴직급여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2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 - 3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단,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
  - 4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 - 5.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  - 6. 가입자가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  - 7. 가입자가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- 8.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. 단,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
  - 9.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- 10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11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
  - 12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

-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  - 1. 1년 미만 :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
  - 2. 1년 이상 2년 미만 :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
  - 3. 2년 이상 3년 미만 :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
  - 4. 3년 이상 4년 미만 : 이 예금의 3년제 약정이율
  - 5. 4년 이상 5년 미만 : 이 예금의 4년제 약정이율
  - 6. 5년 : 이 예금의 5년제 약정이율

# 제8조 (만기후이율)

만기일 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청구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 제9조 (재예치)

- ①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
  - 1. 이 예금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당초 계약기 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됩니다.
  - 2.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  - 3.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되지 않으며,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
- ②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
  -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
  - 2.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 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
### 제9조의 2 (재예치 기준일)

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하며, 만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
### 제10조(분할해지)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 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


- 1.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3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
- ③ 고객이 이 예금의 분할해지를 청구할 때에는 예금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분할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분할해지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 제11조 (거래제한)

- ① 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 부 칙

## 제1(시행일)

이 약관은 2017년 11월 24일 이후 신규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며, 기존가입고객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 부 칙

# 제1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### 제2(경과규정)

제9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자동재예치 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